

광주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3359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정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서성일, 김록영

변 론 종 결 2022. 9. 14.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921,1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60,92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 C은 2007. 6.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E 사이의 대출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이후 D이 위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위 은행은 F 유한회사에게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는 D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579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2. “D과 C은 F 유한회사에게 379,981,019원 및 그중 230,954,184원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F 유한회사는 2018. 11. 30.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D과 C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 원고의 양수금 채권의 2019. 2. 25. 기준 원리금은 386,597,259원(= 원금 100,000,000원 + 이자 286,597,259원)이다.

나. C의 송금행위

- C은 1998. 3. 25. 피고의 딸 G과 혼인하여 1남 2녀를 두었는데, 2021. 3. 2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 C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19. 5. 6.부터 2021. 5. 6.까지 사이에 피고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45회에 걸쳐 60,921,15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좌로의 각 송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
- C은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2021. 1. 5.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가(2021하단21호, 2021하면21호), 2021. 7. 20. 위 각 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 14, 15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C은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송금행위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60,921,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송금행위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C이 피고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C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고,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C은 배우자 G과 자녀들의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와 G이 사실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원은 C이 피고에게 증여한 돈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선의도 인정된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의 인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C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 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는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대한 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점을 들어 곧바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달리 볼 것이 아니다(위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덧붙여 을 제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좌로의 대부분의 입금은 C(이 사건 송금행위), G, 피고의 딸이자 G의 동생인 I, 피고 및

피고의 직장¹⁾ J센터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의 급여가 이 사건 계좌로 지급되면 피고의 다른 은행 계좌로 그 금원 중 일부가 송금되었고, 피고가 G 및 그 자녀들과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금 외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내역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③ 오히려 이 사건 계좌의 출금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C와 G의 자녀들의 학원수강료, 교통비, 용돈, 급식비, G와 자녀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행위로 지급된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C이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당사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하여 금원을 증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제3항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송금행위를 통한 금원의 신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해림

목 록

NO	거래일자	입금금액	적요
1	2019. 05. 06.	183,580	
2	2019. 05. 06.	138,320	
3	2019. 05. 17.	1,200,000	
4	2019. 06. 07.	2,000,000	
5	2019. 06. 10.	500,000	
6	2019. 06. 14.	500,000	
7	2019. 06. 21.	500,000	
8	2019. 07. 01.	2,000,000	
9	2019. 07. 01.	55,000	
10	2019. 07. 02.	200,000	
11	2019. 07. 31.	900,000	
12	2019. 08. 13.	2,000,000	
13	2019. 09. 10.	1,000,000	
14	2019. 09. 12.	100,000	
15	2019. 10. 18.	1,500,000	
16	2019. 10. 29.	200,000	
17	2019. 11. 06.	2,000,000	
18	2019. 12. 10.	2,000,000	
19	2019. 12. 20.	1,000,000	
20	2020. 02. 03.	1,000,000	
21	2020. 02. 24.	1,400,000	
22	2020. 02. 26.	1,500,000	
23	2020. 03. 24.	1,000,000	
24	2020. 03. 30.	2,000,000	
25	2020. 04. 07.	2,000,000	
26	2020. 05. 12.	2,480,000	
27	2020. 05. 15.	1,000,000	
28	2020. 05. 30.	2,000,000	
29	2020. 06. 02.	9,600,000	
30	2020. 07. 08.	1,500,000	

31	2020. 08. 03	1,330,000		
32	2020. 08. 21	1,000,000		
33	2020. 08. 21	200,000		
34	2020. 09. 07	2,000,000		
35	2020. 09. 17	1,700,000		
36	2020. 10. 01.	60,000		
37	2020. 10. 02	180,000		
38	2020. 10. 18	100,000		
39	2020. 10. 02	1,450,000		
40	2020. 10. 21.	3,000,000		
41	2020. 10. 26.	1,281,250		
42	2020. 11. 14.	3,000,000		
43	2020. 11. 20.	1,450,000		
44	2021. 03. 27.	393,000		
45	2021. 05. 06.	320,000		
합계		60,921,150		

1) 대표자가 G이다.